

국립박물관문화재단 특정감사 결과보고

가. 감사개요

■ 감사기간 : 2011. 1. 10. ~ 1. 19. (8일간)

■ 감사반 : 감사담당관 □□□ 외 4명

■ 감사내용

- 기관운영 전반, 계약·예산집행(경상비) 및 장·차관 지시사항
- 박물관 위탁사업 및 타 기관 설치 매장 운영 실태 등 각종 사업 추진 사항
-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업무협력 관련 사항

나. 감사결과

(단위: 건, 천원)

합 계			신분상 조치		재정상 조치		행정상 조치				현지 조치	모범 사례
							주의 (경고)	시정	개선	통보 등		
건수	금액	인원	건수	인원	건수	금액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
6	6,863	-	-	-	1	6,863	2	-	2	1	-	-

※ 별첨 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감사처분 요구내용

(국립박물관문화재단)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	<p>○ 법정법인 전환을 계기로 향후 재단의 운영방향 재정립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박·재단 간 업무협력 미흡 · 중박과 재단 양기관은 재단 운영에 대해 각각 지도 감독권과 경영자율권을 내세우며 빈번한 의견대립과 비협조로 업무 비효율 초래 -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 부적정 · 중박이 재단에게 관리위탁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상 일부만을 사용·수익토록 승인하여야 하는데도, 전체를 사용·수익토록 승인 · 중박은 사용·수익 승인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만 징수하여야 하는데도, 재산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토록 조치 - 문화재단의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그동안의 성과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들을 검토·개선하고, 법정법인으로서 문화재단의 운영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 	<p>○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정법인화 계기 향후 입법취지에 맞는 운영방안 강구 등 · 외부 문화상품점 운영 여부 ·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허가후 국고보조금 점진적 축소 방안 ·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의 합리적 개선 - 중박·재단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
2	<p>○ 직원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체 규정 상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, 특정인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- 조직이 신설되었을 때는 그 업무량을 분석하여 그에 알맞는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의 수를 산정하여 직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채용하여야 하는데, 업무량 분석도 없이 과다하게 직원 채용 	<p>○ ○○ 경고 및 개선 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사관련 규정 보완
3	<p>○ 인센티브제 운영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센티브제도의 목적과는 달리 '09년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,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서 직원과 전체 매출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부서 직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	<p>○ 시정 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수 6,863천원 - 인센티브와 성과급 통합 운영
4	<p>○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재단 회계규정 상 수의계약 한도를 넘는 금액의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	<p>○ 기관 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단 회계규정 준수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·용역 계약의 경우만 가능한데, 공사계약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(2건, 총 187백만원)하고, 최소 공고기간(10일) 미준수 - 공사 계약 시 분할발주금지 규정 위반 및 원가내역서 검토 소홀 	
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○ 교육훈련비 지급 부적정 - 자체 규정 상 ○○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급근거가 없는데도, ○○에게 「2009년 하반기 국가정책과정」 교육훈련비 11,100천원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선 요구 - 관련규정 마련
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- 업무추진비를 부서에서 집행할 경우 200천원 이상만 사전 결재하고, ○○ 및 ○○○○은 사전 결재절차도 없이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절차 부적정 - ○○, ○○○○은 업무추진비를 직원과의 통상적인 식사경비로 집행하는 등(○○은 39회 1,701천원, ○○○○은 243회 6,091천원) 회의·행사 경비와 유관 기관 업무협의 및 관서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토록 한 우리부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위배되게 사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선 요구 - 관련지침에 맞게 업무추진비 사용